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19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홍기원·문진석·허 영

강선우 · 김교흥 · 정을호

손명수 • 박상혁 • 한민수

윤종군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치로서 자체중량"을 "장치로서 기체의 성질·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및 자체중량"으로,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을 "패러글라이더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유인자유기구
-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제127조제2항에서 같다)
-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제127조제2항 본문 중 "동력비행장치"를 "무인자유기구, 동력비행장 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본문에"를 "무 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 을 포함한다) 및 제2항 본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	3
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u>장치</u>	<u>장치</u>
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로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
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장치 및 자체중량
행글라이더, <u>패러글라이더, 기</u>	
<u>구류 및</u>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u>더 및</u>
<u><신 설></u>	<u>가. 유인자유기구</u>
<u><신 설></u>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
	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
	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제127조제
	2항에서 같다)
<u><신 설></u>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4. ~ 34. (생 략)	4. ~ 34. (현행과 같음)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

- 인) ① (생략)
- ② <u>동력비행장치</u>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 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 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자유기구, 동력비행장치
,
③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
고 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u>및 제2항 본문에</u>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